

「길음3축진구역 사업시행 (2차)변경인가 신청에 따른」
관련부서(기관)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

2016. 1

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
부서(기관) 업무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

연번	부서명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고
1	길음뉴타운 8단지 입주자 대표회	<p>[통학로] 옹벽 일부 철거후 통학로 조성은 이용자로 인한 인접동의 생활권 침해가 예상되고, 8~12미터의 단차가 있으므로 위험물건 투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통학로 대신 녹지로 대체 조성</p> <p>[옹벽] -철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우리 아파트의 외벽, 주차장등 시설물에 이상이 없음을 보장후 철거 시행</p> <p>-철거시 발생 예상되는 소음, 분진 등에 대한 대책과 피해 입주민에 대한 보상마련</p> <p>-길원초등학교 통학로인 으뜸이길 주변의 옹벽에 대한 대책 마련-전체적인 외관, 디자인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구조로 변경후 철거</p> <p>[어린이 놀이시설] -설계도상 101동과 102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옹벽과 바로 접해있어 어린이 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울림현상으로 인해 소음이 배가되어 우리단지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전 설치 요청</p>	<p>[통학로] -유관부서와 협의후 추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</p> <p>[옹벽] -계측관리등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후 시행 하겠음 -철거전 방음벽을 설치 하며 절단공법등을 시행하여 소음, 분진 발생을 저감하겠으며, 별도보상 협의과정을 이행하겠음 -8단지 옹벽과 연계 하여 철거범위, 디자인 등을 협의하여 조성 하겠음</p> <p>[어린이 놀이시설] -놀이터는 단지경계보다 낮은 위치에 계획되며 방음림을 조성하여 접근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</p>	
2	길원초등학교	<p>1.철거 시기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는 동계방학 및 학기말 방학이나, 토,일 공휴일, 평일은 방과후 시간(오후3시 이후)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먼저, 소음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-최대한 학습권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 하여 진행하며, 철거 및 터파기 작업은 일별, 시간대별 조정하여 시행, 먼저,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 및 살수작업을 철저히 시행하겠음</p>	

연번	부서명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고
		<p>2.철거전 옹벽과 인접해 있는 조경수와 학교 시설물(가로등)등을 학교측과 협의하여 이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3.철거후 옹벽자리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화단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4.철거순서는 학교측으로의 소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작하여 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단계로 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5.공사전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. ※(2015.12.5. 20:00경 안전펜스 전도사례가 있었음)</p> <p>6.옹벽철거후 아파트와 학교사이에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서는 안됩니다.</p> <p>7.옹벽철거후 아파트와 학교간의 경계표시는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학교측과 협의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8.기타 옹벽철거와 관련된 모든사항은 학교 측과 사전에 상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/p>	<p>-시설물 이전시 사전 협의 하겠음</p> <p>-옹벽철거후 마감은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 하며, 녹지공간(잔디 및 교목등 식재)을 조성</p> <p>-소음저감 및 안전을 위해 최대한 학교와 이격하여 고정식 펜스를 설치하고, 작업구간은 이동식 방음벽을 보강 하여 시행하겠음</p> <p>-안전시설물 설치전 사전검토(현장여건조사, 구조검토등)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시행하겠음</p> <p>-아파트와 학교사이의 출입문은 삭제함</p> <p>-경계부 표시는 관계 관청의 협의 및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 하며, 사전에 학교와 협의후 진행하겠음</p> <p>-옹벽철거와 관련하여 기타사항 시행시에는 사전협의 하겠음</p>	
3	교통행정과	<p>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조례」 제10조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착공전 제출하여 주시고, 길원초교 정문앞 주출입구 교통안전시설물 계획은 향후 구체적으로 협의 설치 요함</p>	<p>-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공사착공전 제출하겠으며,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구체적 협의 하겠음</p>	

연번	부서명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<p>-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(교통영향평가) 변경신고(보완보고서,2016.01)에 준하여 교통대책을 이행하고, 사용승인 6개월전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경찰 교통규제 심의 및 원인자 공사승인 절차 등을 교통행정과 사전협의후 시행토록 안내 요함</p> <p>-『도시교통정비촉진법』 제22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.통보 바라며, 교통영향평가(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)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(보고서)를 제출하여 사용승인 전 확인가능토록 조치 요함</p>	<p>-보완보고서에 준하여 교통대책을 이행하였으며, 사용승인 6개월전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원인자 공사승인 절차를 사전협의 하겠음</p> <p>-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.통보하겠으며,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(보고서)를 사용승인전 제출하겠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어르신복지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편의시설 설치계획 검토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편의시설의 종류</th> <th colspan="2">설치대상</th> <th rowspan="2">설치 여부</th> </tr> <tr> <th>의무</th> <th>권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매개 시설</td> <td>주출입구 접근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>장애인 전용 주차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>주출입구 높이차 제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내부 시설</td> <td>출입구(문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>복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>계단 또는 승용승강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위생 시설</td> <td rowspan="3">화장실</td> <td>대변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>소변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>세면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설치</td> </tr> <tr> <td>욕실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샤워실, 탈의실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안내 시설</td> <td>점자블럭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유도 및 안내설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경보 및 피난설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기타 시설</td> <td>객실,침실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관람석 및 열람석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접수대,작업대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매표소,판매기,음료대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편의시설의 종류		설치대상		설치 여부	의무	권장	매개 시설	주출입구 접근로	○		설치	장애인 전용 주차구역	○		설치	주출입구 높이차 제거	○		설치	내부 시설	출입구(문)	○		설치	복도	○		설치	계단 또는 승용승강기	○		설치	위생 시설	화장실	대변기	○	설치	소변기	○	설치	세면기	○	설치	욕실		○		샤워실, 탈의실		○		안내 시설	점자블럭		○		유도 및 안내설비				경보 및 피난설비		○		기타 시설	객실,침실		○		관람석 및 열람석				접수대,작업대				매표소,판매기,음료대				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				<p>-검토보고서와 같이 설치하겠음</p>	
편의시설의 종류		설치대상			설치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의무	권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매개 시설	주출입구 접근로	○	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장애인 전용 주차구역	○	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출입구 높이차 제거	○	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내부 시설	출입구(문)	○	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복도	○	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단 또는 승용승강기	○	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생 시설	화장실	대변기	○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소변기	○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세면기	○	설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욕실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샤워실, 탈의실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안내 시설	점자블럭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유도 및 안내설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경보 및 피난설비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시설	객실,침실	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관람석 및 열람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접수대,작업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매표소,판매기,음료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부서명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고
		<p>[기술상담내용]</p> <p>1.주출입구 접근로(의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유효폭:1.2m이상으로 설치함 -기울기:1/18이하로 설치함. 대지내 주접근로 단차없음 -경계:접근로(보도)와 차도 연석(경계석)으로 구분하여 설치함 -재질및마감:미끄러지지 않는 재질(보도블럭)로 평탄하게 설치함 -보행장애물:접근로 구간내 장애물 없음 <p>2.장애인 전용주차구역(의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설치율:법정주차대수 485대중 18대 설치함 (서울시설치조례 3%이상) -설치장소: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 구역에 설치함 -크기:주차대수 1대당 크기 폭3.3m이상, 길이5m 이상으로 설치함 -마감:주차공간의 바닥면은 높이차이 및 기울기 없이 평탄하게 설치함 -표시:주차구역 내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 및 주차구역 바닥면은 청색으로 표시함 (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 적용함) -표지판:안내표지판 설치함 (기재사항 표시 및 규격:가로0.7m, 세로0.6m, 높이1.5m) *지하주차장 램프 입구측면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치안내표지판 설치함 <p>3.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(의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주출입구 높이차이 0.1m~0.7m임. 이에 경사로를 적용하여 설치함 <p><경사로 설치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유효폭:1.2m이상으로 설치함 -기울기:1/18이하로 설치함 -활동공간:경사로의 시작과 끝에는 1.5m*1.5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함 	<p>-기술상담 내용과 같이 설치하겠음</p>	

연번	부서명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고
		<p>-손잡이:양측손잡이 연속으로 설치하고 시작과 끝 0.3m이상 수평손잡이 연장하여 설치함 (손잡이높이 0.8m~0.9m, 지름32~38cm)</p> <p>-마감:미끄러지지 않는 재질(화강석 버너마감)로 평탄하게 설치함</p> <p>*조건상 대상시설물의 주출입구가 대지경계선상에 인접하고 있어 경사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여 부출입구로 적용함(주출입구 측면에는 부출입구 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)</p> <p>4. 출입구(의무)</p> <p>-유효폭:0.8m이상 설치함</p> <p>-활동공간:전면유효거리 1.2m이상으로 설치함</p> <p>-문형태:주출입구 자동문 및 양여단이 문으로 설치함</p> <p>-손잡이:수직손잡이 및 레버형으로 설치함(높이 0.9m)</p> <p>-기타:주출입문 0.3m 전면 점형블럭 설치함</p> <p>5.복도(의무)</p> <p>-유효폭:1.2m이상으로 설치함</p> <p>-바닥:복도 내 바닥면 단차없음</p> <p>6.계단 또는 승강기(의무) *계단검토</p> <p>-유효폭:1.2m이상으로 설치함</p> <p>-디딤판과 철타면:디딤판 너비0.28m이상, 철타면 높이 0.18m이하로 설치함 (디딤판의 너비와 철타면의 높이 균일하게 설치함)</p> <p>-손잡이:계단 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함. 경사면 끝부분 0.3m이상 수평손잡이 설치함 (손잡이 높이 0.8m~0.9m, 지름32~38cm)</p> <p>-점자표지판:손잡이의 양끝 및 굴절부분 점자표지판 부착함</p> <p>-재질과마감:계단코에는 경질고무류 미끄럼방지개설치 및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의 0.3m전면에는 계단 폭만큼 점형블럭을 설치함</p>	<p>-기술상담 내용과 같이 설치하겠음</p>	

연번	부서명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고
		<p>6'.계단 또는 승강기(의무) *승강기검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설치장소: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-활동공간:승강기 전면 1.4m*1.4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함 -크기:유효바닥면적 폭1.6m이상, 깊이1.35m이상으로 설치함, 출입문폭 0.9m이상으로 설치함 -조작설비:모든 스위치(호출버튼,조작반,통화장치 등) 점자표시 및 점자표지판 설치함(높이0.8~1.2m이하), 진입방향 우측면에 높이 0.85m에 가로 조작반 설치함 -기타:승강기내 수평손잡이 높이0.8~0.9m 연속설치함, 승강기후면 0.6m높이에 거울 설치함, 승강장의 도착여부 표시로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함, 승강기 내부 도착층 및 운행상황 표시로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함, 되열림장치 설치함, 각 층 호출버튼 0.3m 전면 점형블럭 설치함, 승강기 내부 선택버튼 누름시 점멸등 켜짐 및 음성안내 장치 설치함 <p>7.대변기(의무)</p> <p><일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설치장소: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, 출입구(문)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-재질과마감:화장실 바닥면 단차없음.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(논슬립타일)로 마감 -점형블럭:일반화장실 출입구(문)옆 벽면의 1.5m 높이에 남/여 구별 점자표지판 부착하고 0.3m 전면에 점형블럭 설치함 <p><대변기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설치위치:지상1층 장애인화장실을 남/여 구분하여 각각 설치함 -활동공간:유효바닥면적 폭1.4m이상, 길이1.8m 이상으로 설치함, 대변기 측면 유효폭 0.75m이상 활동공간 확보하여 설치함 -출입문:통과유효폭 0.8m이상,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설치함 -구조:양변기형태 설치함(좌대높이 0.4m~0.45m 	<p>-기술상담 내용과 같이 설치하겠음</p>	

연번	부서명	검토의견	조치결과	비고
		<p>이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손잡이:수직손잡이 0.9m, 수평손잡이 0.6m, 설치높이 0.6~0.7m이하, 수평손잡이 변기중심에서 0.4m, 양측손잡이 간격 0.7m내외, 다른쪽 회전식 손잡이 설치함 -부속물:사용여부설비 및 잠금장치 설치함 -세정장치:광감지식 설치함 -기타:남/여 장애인화장실내 영유아용거치대 각각 설치함 <p>*지상1층 화장실내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여 지상2층에 각각 설치함</p> <p>8.소변기(의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설치위치:지상1층 남자화장실내 설치함 -손잡이:수평손잡이 높이 0.8~0.9m 및 수직손잡이 높이 1.1~1.2m 설치함 <p>9.세면대(의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구조:세면대 상단높이 0.85m, 하단높이 0.65m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함 -기타:세면대 양옆 수평손잡이 설치, 광감지식 수전 및 전면거울 설치함 	<p>-기술상담 내용과 같이 설치하겠음</p>	
5	성북소방서			
6	도시계획과	-기한내 의견없음		